



보 건 복 지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 이행관련 협조 요청

1.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귀 협회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2.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아동학대 방지대책」을 마련·시행하고 있습니다.

- 특히,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 환경 점검을 실시하고, 학대피해아동을 상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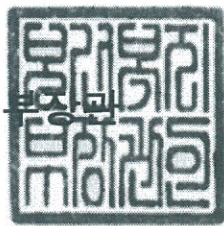
3. 현재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따라 「의료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.

- 또한, 정당한 사유 없이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제 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그간 진료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었던 경우 또는 학대증후군(T74) 상병 으로 진료한 경우 신고 누락이 없었는지를 확인·점검하고,

- 향후에도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의원·병원에 안내해 주시길 협조 요청드립니다. 끝.

보건복지부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

주무관 박영호 행정사무관 이준석 서기관 박창규 아동권리과장 김일열 전결 2016. 6. 8.

협조자

시행 아동권리과-3160 (2016. 6. 8.) 접수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http://www.mohw.go.kr
전화번호 044-202-3434 팩스번호 044-202-3968 / emile05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